

재정난 해소를 위해 검토한 지하철운임조정안에 대하여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9조의2 조항과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운임조정에 반영코자 함.

□제안내용 : 지하철운임 조정안(별첨)

□참고사항

- '98. 1.16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운임인상 요청
- '98. 5.28 철도청 운임인상 협조요청(철도청→시)
- '98. 8.26 철도청 운임인상 협조요청(철도청→시)
- '98. 8.29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운임인상 요청

- 9.11 철도청 운임인상 협조요청(철도청→시)

지하철 운임 조정(안)

□현행 운임체계

- 구역제 : 시계내를 7개 구역으로 분할
 - 1구간 : 2개구역까지 450원
 - 2구간 : 2개구역 초과시 550원
- 이동구간제 : 7개 구역 외곽지역에 대하여 거리별로 구분
 - 승차역 기준 10km까지 기본운임 450원
 - 10km 초과시 매 5km마다 초과운임 66원가산

□운임조정(안)

- 조정내역

구	분	현	행	1 안	2 안	3 안
구역제	1구간	450원		500원	530원	550원
	2구간	550원		600원	630원	650원
이동구간제	5km마다	66원		73원	77원	80원

○시행시기 : 철도청과 협의

□집행부 의견 : 제 2 안

書 面 答 辯 書

○柳基洪議員

(質疑要旨)

아현동 웨딩의 거리, 북아현동 가구의 거리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는?

(答 辯)

○현재 서울시에는 15개 자치구에서 20개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은

- 자치구 단위로 주민요청이나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거리 특성을 살려 나가기 위하여
 - 전통적으로 상징적인 거리 명칭부여와 정례적인 거리축제 행사 유치
 - 가로환경 조성, 문화공간 확보 등 각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법령이나 제도적인 틀 속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치구의 문화적 감각과 기획력 그리고 투자우선순위를 문화에 두느냐가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현동 지역의 웨딩거리와 가구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 자치구에서
 - 가로등, 가로수, 보도블럭 개선 등 가로환경 조성
 - 결혼사진, 여행, 혼수품 등 유사업종의 유치
 - 신촌문화축제, 가구축제 등 거리축제 행사 개최와 홍보활동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 우리 시에서도 자치구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가로경관조성과 문화적 요소 투입 등 문화적 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문화적인 특성이 집약된 지구나 거리를 지원하고 조장할 수 있는

법령개정 등 제도화 방안을 문화관광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質疑要旨)

柳基洪議員님께서, 최근 잇따른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서울시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答 辯)

○ 議員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최근 경기 부천과 진북 익산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화재 사고의 교훈을 거울삼아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최근 부천과 익산에서 발생한 LPG 충전소 폭발화재는 그 원인이 안전관리자의 자체 점검 및 직무 태만과 종사원의 안전수칙 무지에서 야기된 사고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그러면 우리 市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부천 가스폭발사고 이후 즉시 LPG 충전소 65개소, 판매소 481개소, 가스시설 정압기 715개소, 주요가스공급업소 442개소 등 총 1,703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소방관서, 가스안전공사 및 가스회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지적대상 157개소를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각 업소에서 실제 안전관리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업소의 안전관리자, 충전원과 종사원 650명에 대하여 소방방재본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하여 소방방재본부 대회의장에 이들을 소집 1,2차로 나누어 특별교육을 실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 또한 도시가스시설에 대하여는 우리 市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 8,752km에 대하여 배관 안전점검원(383명)이 매일 1회 이상 관로순찰을 실시하고 이를 가스안전공사에서 철저히 감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주요 장기대책으로서는

- 도시가스시설 노후 불량배관 186km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완전 교체토록 독려하고, (당초 '99말까지 계획)

- 가스시설 설치시 설계, 감독, 시공자를 배관 등의 공사시 철저히 감독토록 하고, 실명시공을 확행하여 부설시공을 막고, 사후

책임까지 지도록 하겠으며,

- 도시가스 배관망도를 전산입력, 소방관서에 비치하여 소방순찰 노선에 포함시키고, 유사시 소방관이 정압기를 신속히 차단조치하는 등 소방작전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또한 LP 가스안전관리기준 및 종사자 교육대상을 강화하고, 소방관서에서는 가스불량 불법 취급업소의 단속을 연중 부단히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質疑要旨)

부상식 고정화장실의 전면 설치보다는 홍수 시에도 물이 차지 않는 제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곳을 찾아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할 용의는?

(答 辯)

○ 간이화장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議員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議員님께서 제시하신 한강시민공원의 높은 곳을 택하여 고정식 수세식 화장실 설치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97.7월에 건설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나, 하천법 규정상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 침수가 되지 않는 설치대상 지역은 제방천단 밖에 없으나, 이 또한 하천법에 규제를 받고 있어 건설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재건의하고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 당분간 이동화장실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위생 및 청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尹汝亨 議員

(質疑要旨)

상봉터미널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상봉전철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으로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터미널 자리를 박차장으로만 이용하도록 하면서 동서울터미널로 합치도록 하는 것은 교통량 분산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신데 대하여 ('98.10.15. 본회의 질의·답변시의 보충질의)

(答 辯)

○ 말씀하신 대로 상봉터미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철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터미널에 부대사업을 더 유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

있습니다만,

- 터미널사업자가 이미 이러한 방안들을 포함한 다각도의 활성화방안을 시행해 보려고 하였으나 전철역과 바로 연결되는 다른 터미널(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심리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 또한 상봉터미널 노선을 당분간 동서울터미널로 합쳐서 운행하는 경우에도 양 터미널간에 중복운행되던 노선을 감회·감차하여 운행하도록 지도함으로써 동서울터미널 주변의 교통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 상봉터미널자리를 박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동 장소가 다른 용도로 활용될 때까지로만 한정하여 향후 운수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박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議員님의 지적대로 터미널이 공익사업으로서 그 기능을 계속하여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최근의 경제난과 시민들의 교통수단 이용행태 변화 등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과 이를 이유로 한 터미널사업자의 요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吳尙俊議員
(質疑要旨)

○ 환관리

- 환관리에 대하여는 판단·선택이 중요한 문제이며, 경험이 없고 기능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바, 행정1부시장이 직접 나서 해결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난번 7,8월에 책임결정을 하지 않은 환관리 담당부서 담당자 문책과 향후 환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 그 동안 서울시 재정·금융자문위원으로서 터미널 자문받은 사항을 제출 바랍니다.

(答 辯)

○ 환관리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 환관리는 주로 선물환 거래를 중심으로 환율변화에 따른 환차손을 막기 위하여 외국과의 민간거래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 환관리에 대한 지적은 서울시 외화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IMF 상황에서 외화부채 운용에 따른 환차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서울시는 IMF 상황 이후, 특히 최근 들어 외화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정보교환, 시 재정·금융자문위원 등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수렴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기본적으로 외화부채에 대한 환관리 문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①환관리에 따른 또 다른 위험요인 ②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상 제약 ③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부채의 특성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다만, 앞으로 서울시의 외화부채 관리의 효율화 방안 및 적절한 환관리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서울시 환관리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말씀드리면
 - ① 선물환거래 등 환관리는 많은 위험요인이 있으며, 전문가라 하더라도 장래의 예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선물환 거래는 장래의 외환거래에 대하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Fix하여 거래하기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환율예측이 반대로 되는 경우에는 선물환거래가 오히려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실을 보는 일종의 Zero-Sum Game으로 볼 수 있으며, 선물환거래를 하는 상대방도 전문가라고 가정할 수 있고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한다 할 수 있으므로 우리측이 전문가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전문가 상호간의 경쟁이 되므로 우리가 반드시 이익을 실현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 선물환거래는 거래비용이 수반되며 통상 1년이하 단기거래는 현 수준 환율에서 30~40원, 5년 정도의 장기거래는 현 수준 환율에서 300원 이상의 거래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거래비용은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환율상승이 발생할 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때 이익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외국 헤지펀드회사들이 국제환시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례가 외신을 통하여 보도되는 것은 외환예측의 어려움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1년이상 장기 환율예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고, 국내에서는 1년이상 장기 선물거래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장기 1년이상 5년의 원화 선물환 거래는 홍콩, 싱가포르 등 국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외국환관리규정상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등 범상의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현행 서울시조례 및 규칙에는 선물환 거래를 하면 아니된다는 明文의 규정은 없으나,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 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15조제2항)

-장래에 외화를 선물거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일종의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선물환거래는 그 특성상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환율의 흐름속에서 동태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사전 의회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선물거래의 특성으로 볼 때 선물거래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③ 위 2가지 사항을 논의로 하더라도 서울시 외화부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물거래를 하기에 적합치 않은 사항들이 많습니다.

-서울시 외화부채는 양키본드(3억\$)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차관으로 들어와 서울시에 다시 빌려준 전대차관들입니다.

-국가가 도입시에 상환통화(\$, ¥ 등), 상환기간, 이자율 등 상환조건이 이미 정하여져 있고, 원리금 납부일,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행·관리되어야 합니다.

-전대차관은 장기·저리의 자금으로서 서울시의 필요에 의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방식에 맞추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임의대로 상환방법을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양키본드의 경우는 도시철도공사에 의하여 6개월 단위로 이자가 상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편성된 예산에 의하여 상환관리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달러대 원화 환율 1,240.7:1기준으로 상환되었습니다.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의하여 이자 상환기일에 맞추어 상환하는 것이므로, 환율이 낮다고 판단하더라도 임의대로 상환을 하거나, 외화를 매입 또는 매입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서울시 외화부채는 상환기간이 10년이상 25년에 이르는 장기 부채들입니다. 국내 선물환거래는 장기 1년이상은 찾아보기도 힘들며,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형성되는 장기 선물거래는 거래비용도 높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시장이 아님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④ 결국 선물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환관리는 민간부문에서 수출입자금 등 단기 상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일정환율에서 일정한 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지난 7,8월에 책임결정을 하지 않은데 대한 문책 및 향후 환관리 방법에 대한 질문에 말씀드리면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선물환 거래 등 환관리를 하는데는 크게 3가지 제약요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 지난 7,8월에 책임 결정을 하여야 할 대상, 내용이라면 크게 양키본드의 조기상환에 관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나, 다행히 IMF이후 최저수준의 환율에서 이자가 상환되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 환관리를 하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하는데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환관리를 하여도 손실이 발생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환관리를 하면서 손실을 발생지 않을 전문가가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 향후 서울시의 환관리 방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하여 서울시의 외화부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환관리 정책을 펴는 데는 제약요인들이 많아 적절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서울시 재정·금융자문위원으로 자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 수시로 재정·금융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향후 중요한 금융문제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기에 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그 동안 자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자문받은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자료들은 많은 자문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록해 둔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서울시 재정·금융자문위원 자문사항

1. 재정·금융자문위원

시장 건의사항 검토('98. 9)

○ 건의위원 : 이덕훈 재정·금융자문위원(49세)

- 현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위원(상은·한일은행 합병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겸임)
- 금융개혁위원회 행정실장, 감사원 자문위원 등 역임
- 서강대 수학과 주('71), Purdue 대학교 경제학박사('81)

○ 일 시 : '98. 9. 23. 위촉식 때

○ 주요내용

- 서울시는 외화부채들에 대하여 전문가를 통하여 진단을 받아보고, 환차손을 막고 가장 안전하게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Design을 해 볼 필요가 있다.
- 전문가들은 이 분야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 검토의견

- 선물환 계약은 환차익을 볼 수도 있지만, 예측이 어긋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연 5~6% 상당의 위험 Hedge비용이 있다.
- 민간의 경우에도 선물환 거래는 3개월, 6개월 등 단기 외화자금 운용에 이용하며, 1년 이상 장기간의 예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서울시 외화부채는 모두 장기·저리의 자금이다.
-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선물환 거래를 이용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상대측은 큰 손해를 본다는 결론이다.
- 선물환 거래는 계속 연구·검토할 가치는 있지만, 서울시에 선불리 도입하는 것은 모험을 감수하는 행위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외화부채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에 맞지 않는다.

2. 외화부채 도입시

선물환 계약관련 자문사항('98.10)

○ 자문인 : 김택수 市 재정·금융자문위원, 이종진 삼성증권 기업금융2팀장, 재경부 외자관리과 이계문사무관

○ 자문내용 : 선물환계약시 장·단점 및 유의해야 할 사항

- ① 환율변동에 대한 1년 이상의 예측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선물환계약은 주로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진다.
- ② 환차손을 막는 이점이 있지만 연 5~6% 상당의 막대한 위험 Hedge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③ 예컨대 7.875%에 도입하였을 경우 13% 내외의 이자율 부담이 있으며, 결국 국내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④ 환율예측이 어긋날 경우 환차손이 있으며, 막대한 위험 Hedge 비용이 있다
- ⑤ '94년 외화채권 도입시는 환율이 매우 안정되어 있었으므로 누구도 환율 폭등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많은 이자율 부담을 안고 선물계약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 ⑥ 만약 '97년의 경우 선물계약을 하였다면 가장 좋았을 것이나 누구도 IMF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
- ⑦ 선물환계약은 그 대상에 제한은 없으나, 민간의 경우 주로 단기 외화자금의 운용 등

<p>상업용에 이용된다.</p> <p>⑧ 장기저리의 공공차관 등 정부가 도입한 외채에는 아직 선물환 계약을 적용한 예는 없다</p> <p>⑨ 현 선물환시장은 싱가포르 선물환 시장을 주로 이용하지만, 정부가 인정하는 시장이 아니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선물환시장이 발달되지 않았다.</p> <p>⑩ 선물환 계약은 주로 일정 환율에서 Hedge 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예측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3. 외화관리 위험방지 대책('98.10.)</u></p> <p>○ 환위험 Hedge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환 거래 · 원, \$ 통화스왑 · 외자도입시 포트폴리오 분산 <p>○ 선물환 거래</p> <p>1.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 1개월, 3개월, 6개월이 주류 · 장기 : 드물지만 1년이상 5년 거래도 있음 <p>2. 비용 및 위험 - 한국전력 외환관리부 김 정인과장(T 3456-4266)</p> <p>[거래에 수반되는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확실한 위험회피에 대한 대가로 많은 비용이 지불됨. · 현수준의 환율보다 높은 환율에서 선물거래가 형성 · '98.10.15. 경우 단기 1,3개월의 거래는 환율이 1,334원이나 1,370원에서 거래, 장기 5년짜리 경우는 1,699원에 거래 <p>[위험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거래시 장래 예측 환율이 틀릴 경우 엄청난 손실이 발생 · 현재 환율수준에서 추가 선물거래비용 부담(위험Hedge 비용) · 5년후 환율이 현 수준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엄청난 손실이 발생 <p>3. 선물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가 거래되는 선물환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형성 · NDF형태로 거래가 形成 · 그러나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시장이 아니다. <p>※NDF(Non delivery Forward) : 비인도 선물환거래</p>	<p>그러나 국내은행의 NDF시장 참여는 인증 및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해석</p> <p>○ 통화스왑계약 - 한국산업은행 윤태화 차장 (T 398-6302)</p> <p>1. 기본내용 - 외화와 원화의 채무 맞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외자를 도입시 거래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화는 은행이 관리하면서 도입외화 이자를 은행이 상환하고, · 도입처에서는 도입당시 환율로 원화를 차입하여 사용하면서, 은행에는 국내금리 적용 이자 상환 · 원금 상환은 당초 도입당시의 환율로 원화를 환산하여 채무상환 · 이 경우 국내금리와 도입 금리차이에 따라 금리부담의 차이가 발생(例 : 해외금리 7%, 국내금리 13%시, 13%의 금리부담) <p>2. 형태 및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리외자 도입시 고율의 국내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 이 경우도, 환율예측이 반대로 가는 경우 막대한 기회비용(손실) <p>○ 외자의 포트폴리오 분산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자도입시 \$, ¥, sfr 등으로 분산하여 도입 · 원화 환율변동시 동반하여 외화가치가 변하는 경향 ·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오히려 손실 발생 <p style="text-align: center;"><u>4. 해외채권발행 및 외자도입관련</u></p> <p style="text-align: center;"><u>자문사항('98.10)</u></p> <p>1. 재경부 국제금융과 담당(T 500-5367~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에 국제 Broker들이 많이 들어온다. ○ 착수금을 요구하거나, 의향서를 써 달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충분히 살피고,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비자금이다, 아랍계 자금이다 등으로 유혹한다. ○ 처음은 좋은 조건으로 금방 해 주겠다고 하지만, 일이 시작되면 진전이 없다. <p>2. 한국전력 정영철과장(T 3456-4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 미국계 Fund회사는 손실로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 금융기관의 금융경색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연리 7~8%, 5년 상환이면 IMF조건이다.
--	---

Fund회사가 준다는 것은 의심이 간다.

○ 현재 공식적인 차입금리는 13%대다. 해외 채권 발행으로는 자금조달이 안 되고 있다. 7~8%는 들어올 수 없는 금리다.

○ 사전에 Confirmation(양서)를 요구하고 사전에 Fee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양서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양서는 IMF, IBRD정도면 몰라도 함부로 서명할 수 없다. 수수료는 통상 자금이 들어온 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다른 거래에 活用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영어를 잘 아는 한국계 재미교포를 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3. 서태환 현대중공업 재정담당이사(T 746-7676)

○ 일 추진시 출장비, 수수료는 사후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

○ 공식문서시 책임질 사항은 없어야 한다.

○ 한국에 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와서 협의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직접 협의를 해 줄 용의가 있다.

○ 일단은 위험에 대하여 고려를 해야 한다.

4.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부 윤태화 차장 (T 398-6302)

○ 대개 한국인의 브로커를 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 시장에서는 금리가 13%대다. 중간상환이 청구되는 것은 7.875% 발행 이자율이 시장에서는 13%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환이 들어오는 것이다. 양키본드의 중간상환청구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

○ 7~8%수준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에서도 들여오기 힘든 금리이다.

○ 의향서 요구, 협약(계약)서 요구 또는 Fee의 요구가 있을 때는 조심

○ 우려되는 것은 신용있는 서울시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자료(의향서)를 가지고 중소기업, 제3의 기관과의 거래에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5. 양키본드 및 외화예금예치 등

자문사항('98.10)

○ 자문협조 : 살로만증권 김석주 과장, 이덕훈 서울시재정·금융자문위원(KDI선임연구원), 신동기 BTC 서울사무소 상무

○ 서울시 발행 양키본드 관련 사항

· 소지자 : 不特定 다수자(주로 기관이 소유)

· 중간상환청구권의 행사 가능성?

-시장의 여건(수익률, 채권가격)을 보건대 일단 다 들어온다고 가정해야 한다.

· 서울시가 다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Call Option은 없다

-시장에서 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 시장에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의 문제는?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채권의 구입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채권가격이 갑자기 상승하여 目的을 실현키 힘들다.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시장에서 조용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

-구입하려고 하더라도 소지자가 팔려는 의사가 있어야 실현할 수 있다.

· 공모가 아닌 사모를 하는 경우의 문제는?

-대단히 큰 Risk를 감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Investor, 기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외화예금 예치시 장·단점

· 외화예금으로 예금되므로 이자율이 낮다.

· 반면에 환차손을 방지할 수 있다.

· 환율상승시 환차익+이자율(이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金吉原議員

(質疑要旨)

중구관내 일방통행로 2개소는 3~4차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법주차로 인해 2차로 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음. 또한 을지로의 경우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어 을지로를 진행하는 차량은 좌회전을 위해 시청까지 올 수밖에 없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현지 조사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答 辯)

○ 도심의 도로망은 동서축인 종로, 청계천로, 을지로, 퇴계로와 남북축인 남대문로, 삼일로, 돈화문길, 배오개길, 훈련원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돈화문길과 배오개길은 일방통행로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도심의 통행속도를 비교해 보면, 동서축은 평균 21.31km/h, 남북축은 14.13km/h, 도심구간 평균은 17.72km/h로 동서축에 비해 남북축이 소통상황이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 특히, 돈화문로(10.7km/h), 배오개길(11.55km

/h)의 통행속도는 남북측 평균보다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도로구간에 밀집된 소규모 상점들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도로의 용량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 돈화문로와 배오개길 일방통행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목·정체지점개선 사업과 “물류조사 및 물류종합계획수립구상” 용역에서 시행중인 지구물류개선사업 시행시 교통특성을 종합분석하여 일방통행제, 좌회전 허용여부, 주차 및 보행개선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質疑要旨)

○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추진계획은?

(答 辯)

- 우리 시에서는 '96년부터는 지방화·민주화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모든 시정현안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부정부패, 사회부조리 척결, 교통·환경·사회복지, 기초질서 등 우리 시의 당면현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단체를 공모·심사하여 일부 예산을 지원,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금년에도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인 ①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의식개혁을 위한 신문고행사 및 모니터링」사업, ②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매점매석 폭리 및 소매물가 바로잡기」사업, ③식생활 안전시민운동본부의 「두부성분검사」사업 등 공직부정부패 척결과 사회 각 분야의 부조리 문제해소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시민운동을 적극 공모하여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98 직접 참여단체 지원현황

-단체명 : 부정부패 추방 시민연합

(대표 : 방희선)

-회원수 : 1,950명

-사업명 : 의식개혁을 위한 신문고 행사 및 모니터링

-지원액 : 10,000천원

(質疑要旨)

자치구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현황과 상위법을 개정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 강구

(答 辯)

- 우리 시에는 자치구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이 7개 지역이 있으며, 그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제정사항으로 정부(행정자치부)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과 양 자치구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지방자치원리에 충실하고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상위법을 개정하여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의하여 자의적인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개리맨더링식 경계조정의 개연성이 있어 또 다른 민원과 갈등,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전제로 양 자치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도 해당지역 주민의견조사와 양 자치구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경계조정안을 마련토록 양 자치구간 다시 한 번 권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불합리한 자치구간 경계지역(7개 지역)

자치구별	대 상 지 역	경계조정이 어려운 사유
중 구 마 포 구	○마포구 아현 1동 일부지역을 → 중구 중림동으로	○마포구에서 주민이 반대하고 주민의 생활권이 아현동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반대
동 작 구 관 악 구	○관악구 봉천1동 일부지역을 → 동작구 신대방2동으로	○양 자치구의회의 의견 차이 · 동작구의회에서 보라매공원 후문 지역을 동작구 편입을 전제로 현대아파트 지역 관악구 편입 동의 · 현대아파트 동작구지역 주민들이 관악구 편입에 반대
	○동작구 상도1동 일부지역(현대아파트)을 →관악구 봉천3동으로	
종 로 구 중 구	○광화문 빌딩·중구 태평로1가 일부 지역을 → 종로구 세종로동으로	○건물주인 감리회측이 전국 교회의 등기부 주소변경, 외국선교 협약사항 주소변경에 따른 불편을 이유로 경계조정에 반대
성 북 구 노 원 구	○성북구 석관동 일부지역을 → 노원구 월계동으로	○현재 자치구간 협의중
	○노원구 월계동 일부지역을 → 성북구 석관동으로	
양 천 구 구 로 구	○구로구 개봉1동 일부지역을 → 양천구 신정3동으로	○현재 자치구간 협의중

(質疑要旨)

○주택재개발 사업 문제점

- 신당 3구역 원주민 수
- 기 입주자들의 임대아파트 건립원가 보장 문제
- 지방재정법령 개정으로 매각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 관련조례 미개정으로 주민들 고통받음.
- 신당 3구역 공공시설 설치비 보상문제

(答 辯)

○주택재개발 사업 문제점에 대해

- 신당3구역 원주민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조사토록 하고, 그 해결책은?
 -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원주민이란 1950년대~1970년대초 정부의 이주정책에 의해 강제로 집단이주된 자로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시까지 거주한 자이며
 - 1973.3.5. 작성된 기존정착지 현황자료에 의하면, 1950년대~1970년대초에 걸쳐 사회구조적,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화재민, 수재민 및 철거민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의해서 도심지의 인근 임야 등에 이주시켜 이주민 정착지를 형성하였고, 이렇게 형성된 이주민 정착지 수는 98개소로 48,718동이었으며
 - 정부의 이주정책에 의한 원주민에 한하여 변상금을 면제처리한 바가 있었습니다.
 - 신당3구역은 정부의 이주정책에 의한 이주민 정착지가 아니며,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이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축조하여 무허가촌을 형성한 지역입니다.
 - 그러나 '73.12.1. 구역지정 당시부터 구역 내에서 정착하여 거주한 원거주자(조합원)를 파악코자 관찰구청에 통보하여 '98년 10월 29일까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자료가 수합되는 대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별첨 공문사본 참조)
-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립원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바, 지구지정받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이미 건설중인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매입하는 국민주택으로서 건교부 지침인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지침을 적용해야 하므로 별도의 매입가격 산정은 곤란

합니다.

-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재개발구역내 건립하는 임대 및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가를 일반아파트와는 다르게 정해 주도록 건교부에 재차 건의하겠습니다.
- '94.9.27.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매각대금 완납이 되지 않아도 소유권이 이전이 되나, 관련조례 미개정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94.12.20.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을 개정하여 매각대금을 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18호서식) 양식이 수정되지 않은 채 사용됨으로써 발생한 민원이므로 '98.11월중으로 규칙을 개정하여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공공시설 무상 기부채납은 부당함. 신당3구역은 '93년부터 시작된 어려운 지역으로 이 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당제3주택재개발구역은 시행면적이 22만 138㎡로 공공시설중 도로 10,155㎡, 녹지 771㎡로써 '73.12.1. 구역지정되고 '93.5.3. 사업시행인가되어 '98.3.18.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구역으로 대지 및 건축시설물을 관리 처분하고 일반분양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신당제3구역과 같이 이미 사업시행인가되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구역은 기 처분된 대로 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시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앞으로 사업시행될 구역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